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령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9] 업종별 시설기준의 3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(업종별 시설기준)의 나.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란에 (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5) 포장육(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커트미트를 말한다)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(3) 및 (4)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, 구 대조표

현	행	개	정
시행규칙 제24조 별표 9. 중 3의 “나”			
(1)	점포에는 전기냉장시설과 진열상자등 기타 필요한 기계,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	(1)	(현행과 같음)
(2)	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항상 식육을 10°C 이하로 냉각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어야 한다.	(2)	(현행과 같음)
(3)	점포의 바닥은 타일, 콘크리트등 내수성 자재로 하여야 한다.	(3)	(현행과 같음)
(4)	점포에는 중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과 식육 및 기구류의 전용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.	(4)	(현행과 같음)
(5)	(신설)	(5)	포장육(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커트미트를 말한다)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(3) 및 (4)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